

인천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275884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1. 18.

##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505,685원과 그 중 13,490,142원에 대하여 2022. 10. 26.부터 2022. 12. 7.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1. 12.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27. 접수 제5188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김병국

별지